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대비표

1. 대상약관 : 수익증권 저축약관

2. 주요 변경 내용 : 금융투자협회 수익증권저축약관 문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 반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 기준으로 변경***

* 다만 고객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

3. 시행 예정일 : 2025 년 7 월 11 일

4. 개정 대비표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 1 조~제 3 조 <생략> 제 4 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u>받아</u>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u>교부함으로써</u> 성립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u>있습니다</u>.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 1 조~제 3 조 <좌동> 제 4 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u>받음으로써 성립한다</u>. ② <u>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u>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u>교부한다</u>.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u>있다</u>.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수익증권저축약관 에 따른 문구 변경

③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 5 조~제 26 조 <생략> 제 27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u>.<신설></u> 제 28 조 <생략> <부 칙> 1~8 <생략> <u><신설></u> <별첨> <생략>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 5 조~제 26 조 <좌동> 제 27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저축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저축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u> 제 28 조 <좌동> <부 칙> 1~8 <좌동> <u>9. 개정규정은 2025 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u> <별첨> <좌동>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반영
--	--	---------------------------

